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순서

- **5분 자유발언 : 2명**
 - 김향란 의원 : 청정거창 관광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 신미정 의원 : 원도심 공동화 대응책 마련 촉구

-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
 - 보고자 :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건(조례안 1)
 - 보고자 : 신미정 위원장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11건(조례안 6, 일반의안 5)
 - 보고자 : 김향란 위원장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
 - 상정안건 : 8건(조례안 6, 일반의안 2)
 - 보고자 : 최준규 위원장



의 사 일 정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5.(화) 10:00>

부 의 안 건	비 고
<p>【제2차 본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 설립 보고의 건 2.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21.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p>【산 회】</p>	<p>※ 의회운영 위 원 회 : 2</p> <p>※ 총무위원회 : 3~13</p> <p>※ 산업건설 위 원 회 : 14~21</p>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11. 05. 10:00)

5분 자유 발언

청정거창 관광자원 고부가가치
창출방안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 향 란 의원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의동 은행나무길은 노오란 물이
묻어날 만큼 진한 가을빛이고 창포원 가을은 국화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여 파등으로 인한 수익감소에 따라
중단했던 가조~서대구간 시외버스 운행이 11월1일
부터 시작되었고 내년 1월1일 부터는 동대구간도
재개통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지사 현장방문시 도 재정지원 약속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업체 협조를 이끌어준 집행부와 담당직원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며 주민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거창의
관광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듯 교통과 통신 시스템 첨단화는 소득수준 향상과 아울러 관광 활성화의 필수조건이며 굴뚝없는 공장으로 알려진 관광산업은 공장 유치효과 이상으로 생산성을 유발하며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을 가집니다.

주민소득 수준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는 다가올 3-4만불 시대 해양레저 관광트렌드 못지않게 산림이 베풀어주는 효과 특히 기후변동에 따른 산악레포츠 산림휴양 체험치유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고 사회문화 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기존 관광 콘텐츠를 돌아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른 네번째 치른 수승대 거창국제연극제는 외부 단 한방울의 물도 없이 오로지 하늘의 물만을 허락한 청정도시 거창을 잘 대변해 주는 국내 유일의 야외 연극제로 존재가치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개막작 공연을 위한 극장신축문제와 전문예술감독 부재문제만 해결하면 예술관광수요 피서지관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것입니다.

올해만 35만명이 다녀간 감악산 꽃&별 여행축제는 도로 여건 개선과 창포원과 남상면 신원면을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한다면 노을과 별자리 야행관광 수요가 더 늘게 될 것입니다.

가조항노화 힐링랜드는 침체된 가조와 거창지역경제를 상당히 해결했고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인근에 등산로정비, 잔도설치, 수포대공원화, 에콜리안골프장, 꽃단지과 어우러진 백두산온천과 무료족욕장활용, 일본의 제1대 천황 탄생지이자 유소년기를 보낸 성지로서 유적지 활용 등 보완한다면 교통 편리성까지 더해져 가능성이 무한한 글로벌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얼마전 준공한 고제 산림레포츠 파크는 거창읍이 조망되는 고도에 산악이 주는 힐링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진입로 주위를 지역의 향토 먹거리들로 잘 배치하여 무주 쪽 관광객을 유인해야합니다.

한마당대축제는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지역축제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해마다 컨셉을 바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특히 해마다 호평받는 평생학습

축제와 애우관 운영과 올해 처음 시도한 청년축제는 소비지향의 지역축제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지원을 통해 더 크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꽃 출하 시기에 맞춘 아라미아꽃축제는 봄은 맨발 축제와 결합하고 창포원 국화축제때는 국화를 주제로 하면 축제도 알리고 화훼 농민들에게 도움도 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청정거창 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과 관련단체와 주민 모두가 힘들게 만들어낸 매력적인 관광지와 성공 축제를 모두 공짜로 운영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유료화해야 합니다.

주요관광지 주변에 등산로와 트레킹 맨발길 코스를 개발하고 창포원 맨발길은 시설보완하여 사계절 맨발길로, 거창사건추모공원 고령토 맨발길은 적극 활용 홍보하여 최남단 신원에서 북단 고제 빼재까지 잘 만들고 다듬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종 수공예품 가공품을 잘 판매해야 합니다.

최근 관광이 sns소셜미디어 위주인 만큼 관광객 니즈를 파악한 공간배치에 좀 더 노력하고 관광지별 축제 행사 시 거창을 알리고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발굴하여 다양한 쇼핑백 디자인부터 장소별, 용도별 특성에 따라 Y자 병따개, 캐릭터 손수건 같은 굿즈로 만들고 판매한다면 지역홍보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도되는 ‘마을로 떠나는 네 가지 가을여행’ 처럼 버스타고 놀이하고 관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분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 11. 05. 10:00)

5분 자유 발언

원도심 공동화 대응책 마련 촉구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 미 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창읍 도심 외곽지 개발로 인해 날로
심해지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는 도시 중심부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도시 쇠퇴’의 여러
증상 중 하나입니다.

원도심의 상주 인구가 줄어들며 상권도 함께 옮겨가
도심이 쇠퇴하고, 노후 된 건물로 인해 거주 환경이
나빠져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
됩니다.

거창의 경우 상동, 소만, 송정 택지지구의 개발과 가지리, 장팔리와 같은 도심 외곽으로의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 및 신규 아파트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창읍 중심부에 위치한 거창초등학교의 재학생 감소 폭만 보더라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거창의 토지 이용 계획은 혼잡해지게 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과도한 예산과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비효율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허가’가 아닌 거창군 전체를 도시개발 측면에서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거창군의 도시정책도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합문화시설, 근로자 기숙사, 귀농홈 등이 외곽지에 지어져 도심 쇠퇴 가속화의 원인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거창군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옆에도 공동 주택 부지가 덩그러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도한 부지 매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활력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으면 거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원도심 공동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 1만 원 임대주택의 경우 귀농 귀촌인들의 호응이 좋아, 이를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태백시 등에서도 적극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은 ‘거창 맞춤형 청년임대’ 주택을 도심 외곽에 52억 원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인데, 만약 도심의 빈집과 저가 아파트를 활용해 추진했다면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원도심의 유희공간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 빈 집과 저가 아파트를 구매해 기숙사로 지원하거나 귀농인들의 거처로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것은 거창군에서 유희공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도 10년 20년 되면 노후가 되어 다시 지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지어 원도심을 지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하면에 추진하고 있는 ‘경남별장’ 을 원도심에도 적용해 문화 거리의 근대 건축물 원형을 보존·활용한다면 원도심 공동화도 줄일 수 있고 생활인구 증가 및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력을 잃고 쇠퇴한 도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막지 못하면 인구 유입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거창의 미래를 그리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책임
의식을 갖고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22.12.26.)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을 정함(안 제6조의2)
 - 1)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전액 삭감
 - 2)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별로 삭감 또는 감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안 제6조의2에 의원의 구금이나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내용을 규정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면서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의원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권고함.
-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가 실시되고, 지방자치가 성숙하면서 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례안 ·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1
2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무과	4
3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략담당관	8
4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12
5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6
6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19
7	경남연구원 2025년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22
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인구교육과	24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	27
10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30
1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기업과	33
1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정책과	35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 발의(11명)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향란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체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계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삭제하여,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률 위임이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2)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조)

- 3) (군의 책무)->(군수의 책무) 변경 및 약칭 표현 수정(안 제3조)
- 4) 상위법령 저촉 삭제 및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3)
- 5)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삭제(안 제5조제1항제2호)
- 6) 조례상의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군->거창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유례없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창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군의 책무)”를“(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은”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제5조제1항제1호 중 “군”을 “거창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10. 14.

나. 발 의 자: 김홍섭 의원 대표 발의(11명)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홍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2)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 4)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5)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6)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통칭하여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이율을 비롯한 약정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1부.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희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략담당관 이남열]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준공(2024. 10.)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에서 일하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2)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를 정함(안 제3조)
- 3) 입주 대상 및 절차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4) 이용료 및 면제를 정함(안 제6조)
- 5) 퇴거 및 이용제한,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조례안은 10월 준공을 앞둔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와중에 농막, 하우스 등 임시방편이 대부분이었던 주거 형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음.
- 기숙사 완공과 함께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업근로자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고용 농가는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주거시설
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

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제5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기숙사에 입주하려면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 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과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심선애]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교육도시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3) 등록금의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4) 신청 방법,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번 조례안은 거창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일부 지자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역차별받는 상황이 되었음.
- 인구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인재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체장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거창군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같은 목적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신청 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2025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진흥을 위한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조항을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

2) 관광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정비함(안 별표)

가) 법령에서 위임된 관광사업별로 정비

나) 관광사업 지원 확대

- 단체관광 전담여행업자 지정·운영
- 지역업체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 및 그 협약상품 지원
-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 및 소지 관외 관광객에게 물품·상품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체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진흥을 위한 것으로써 안 제4조의2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내용을 보장하고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음.
- 2024. 9. 26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창군에서도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를 위해 소지자와 가맹업체에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정주 인구감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공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개정
(2024. 11. 23.)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 근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수수료를 조례에 위임
 - 수수료: 건당 3,000원
- 2) 진료비 등의 납부 수단 제한 정비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2024.11.23.시행)

※ 타 지자체 개정 예정 현황

3,000원	3,500원 ~ 4,000원	5,000원	미정	비고
60개소	1개소	2개소	8개소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신뢰와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건당 3,000원

제4조 중 조 제목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진료비 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를 “날에 납부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 제안이유

-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거창군 정책 발굴 및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 경남연구원
- 2) 사업내용
 - 민선 8기 군정 방향에 부합한 부문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 거창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등
- 3) 출연금 요구액 : 5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거창군의 인구, 관광, 문화, 농업 등 분야별 거창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경남 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은 상위법령 등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경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가. 제안이유

- 수요 맞춤형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학비부담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이에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개요

- (가) 근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나) 출연금: 4,695백만원(증 1,000백만원)

구 분	2024년 편성액	2025년 요구액	증 감
계	3,695	4,695	1,000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	1,000	1,000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780	780	-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다)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780백만원)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1,000백만원)

↳ 2025년 신규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2025년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을 (재)거창군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장학기금 확대, 장학사업 추진에 지난해와 같이 3,695백만원,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신규로 1,000백만원을 요구하였음. * 지원대상자 약 1,663명 / 지원금액 연 120만원
- 거창군장학회 출연 근거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근거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이번 임시회(제282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한국승강기 대학교 등록금 지원 근거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
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가.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쟁송사무 지원,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 1)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세정공무원 교육 참가)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출연금액: 4,796천원

1) 2025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출연금	4,769	4,796	4,796	0	0	4,796	

※ 산출기초 : '23년 결산 보통세 39,970,184천원 × 1.2/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임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은 4,796천원임.
* 산정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우리군 이용 실적
⇒ 2024년 교육 : 10개 과정 10명 수료
⇒ 지방세 불복사건 관련 자문 : 2023년 4건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 11. 5.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 10. 11.

나. 제출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10. 1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정희]

①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장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북상 병곡 지구는 거창군 대표 여름 관광지로서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적정 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1) 사업명 :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2)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4. 1. ~ 2027. 12.
- 4) 사업비 : 7,651백만원(국 4,591, 기 1,836, 도 612, 군 612)
- 5) 사업내용 : 처리장 신설 Q=240m³/일, 하수관로 L=5.7km 등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m ²)		
계			2,377	30,901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3	답	1,185	15,405	공사지가 13,000원/m ²
토지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70-4	답	1,192	15,496	공사지가 13,000원/m ²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①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처리장 부지 매입)

-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북상면 병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북상면 병곡리 70-3(1,185m²), 북상면 병곡리 70-4(1,192m²)번지를 매입하여 북상면 병곡마을, 장자터, 가리실 마을 등 90가구의 주민들에게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거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4년 5월 21일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함.
⇒ 용역기간 : 2024. 5. 21 ~ 2025. 3. 16
- 2024년 환경부 소관 공공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상면 병곡지구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써 하수의 적정 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가. 제안이유

-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 3) 사 업 비 : 450,000천원(군비)
 -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4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경기 위축과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상승,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금융지원 확대'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함.
-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지속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년 상반기 실적	992건	252억원	2,691건	494억원	106건	14.2억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11. 5.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10.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4. 10. 1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 제안이유

-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명칭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비고
거창군립 노인요양 병원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4,283㎡ (3,007㎡)	▶ 지하1층 :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1층 :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진단검사실 ▶ 2, 3층 : 간호사실, 입원병실 ▶ 4층 : 치매안심병동, 식당 등	126병상 직원 44명

※ 환자수 : 75명(2024. 9. 30. 기준) /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환자 전원 조치

○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병원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2) 위탁기간: 2025. 1. ~ 2029. 12.(5년간)
- 3)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4)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병원 운영 능력(인력, 재정, 기술) 등을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평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2일부터 거창군에서 직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탁 기간도 5년으로 적절함.
- 또한, 병원 운영은 의료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다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2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5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6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7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2
8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25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0. 14.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대표발의

(이흥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라.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흥희 의원)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농업기술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07. ~ 10.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안은 우리 군에서 자라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군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도내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토종 농작물 보존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을 17개 토종농산물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상남도의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군 기후와 유통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군의 토종농산물 지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재배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브랜드 관리, 토종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현재 거창군은 토종씨앗 육성 지원사업으로 거창군여성농민회를 통하여 1,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종씨앗 채종포 운영 및 증식농가 육성, 모종나눔 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 토종농산물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10. 14.

나. 발 의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4. 10. 14.

라.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표주숙 의원)

- 도시민의 농촌체험·휴양수요 충족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행복농촌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27. ~ 10. 4. (8일간)

나) 예고결과: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과 포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거창군 간의 교류촉진과 공생 발전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제3조에서 거창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 우수마을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거창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로 꼽히는 마을들을 보면 그곳만의 특별한 정체성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마을주민들의 협력과 화합이 있었으며 마을 발전과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조례가 제정되면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있어 주민소득 증대방안과 전문인력 육성, 주민역량강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주민갈등 해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는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축과장)

○ 군수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45조)(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건축법」 제87조의2
-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
- 3)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3호)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 지정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19~9.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가 기존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 더해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노후건축물 비율 27.8% 이상)인 인구 50만 명 미만의 구·군이 추가되고

※ 거창군 노후건축물 비율(53.50%)

-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의무화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군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화재 등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각 1명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물 인허가권을 권 거창군의 부실 공사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수도사업소장)

-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안 제13조)

- 1)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수도법」 제3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8. 30~9.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6조의 2의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시설분담금은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서 시설의 공사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제13조5항에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사항에 의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전지훈련 선수단의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거창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지훈련 선수단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1조제3호)

- 1)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경비
- 2) 군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12.~10.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지훈련 선수단의 숙박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지훈련 선수단을 적극 유치코자 하는 것으로
-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는 선수단이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대중골프장 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사업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특별회계, 이익의 처리, 업무 상황의 공표를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골프장 이용료 등, 이용의 취소·제한, 위탁관리를 정함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3,073,266천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19.~10.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제6호)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22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5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80	260	240	240	220

※ 2024년 출연금 240백만원(2024년 대비 20백만원 감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 지원

나. 예산지원 사유

-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는 기업애로사항 지원,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지원, 석재원산지 검증 등을 통해 지역 화강석 산업 발전에 기여
- 2)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 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거창석재산업 지원과 연구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다. 2025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2)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
- 3) 거창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나.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다. 관계법령 : 붙임 2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 화강석 연구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공공·민간부문 연구용역 수행, 거창화강석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거창화강석 홍보·마케팅 업무 지원 등 지역 화강석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24. 10. 11.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4. 10. 14.
- 다. 상정일자 :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4. 10.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 서북부경남거점APC의 민간위탁 운영 관련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서북부경남거점APC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서북부경남거점APC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다. 시설규모 : 부지 36,376㎡ / 시설 연면적 12,603㎡
- 라. 주요시설 : 선별장 5,850㎡, 저온저장고 3,577㎡, 기타 3,176㎡
- 마. 위탁기간 : `24. 11. 1. ~ `28. 6. 30. (3년 8개월간)

※ 직전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후지수매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

바. 위탁사무 :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통합 운영, 시설물 관리)

사. 공모 및 평가

1) 모집방법 : 전국 공개모집(군 홈페이지 공고 / 8일)

2) 평가방법 : 서면평가(90점) + 발표평가(10점) ± 가점(5점)
및 감점(20점)

- 서면평가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40점)

- 발표평가 : 정성평가(10점)

※ 정량평가 : 담당자 및 담당주사 확인 / 정성평가 : 위원회 심의

3) 평가주체 : 서북부경남거점APC 운영위원회(위원 중 응모업체
주주 배제)

아. 선정방법

1) 심사사항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2) 수탁자 선정 : 심사사항 득점의 종합점수 순위로 결정(70점 이상)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 4) 「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전병준)**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북부경남거점 APC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8개월간으로 지난 281회 임시회 시 현 수탁자인 조공 재 계약 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조공에서 2024년 후지사과 수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지 수매를 위해 일정을 당겨 전국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는 것임.
- 새로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시 현수탁자인 조공에 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수탁자의 협약 위반에 따른 조치로 법령이나 관련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4년 3월 ‘거창사과 유통시장 개혁을 위한 군민대토론회’ 개최 시 서북부경남거점 APC 운영에 있어 공선참여 농가 확대, 마케팅 역량제고, 농가 수취가 제고, 선별·정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APC를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및 평가와 선정에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며 민간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